

의안번호	2211179
의 퇴 인	장철민 의원
회 답 일	2025. 9. 16.
추 계 번호	25A352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20%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5억 7,700만원, 2031년 128억 8,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86억 5,300만원(연평균 77억 3,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안 제32조의2)	2,577	5,154	7,731	10,307	12,884	38,653	7,7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 정부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각각 지원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재 운영 중인 성과보상공제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2024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어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한정함
 -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임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법 제35조의5제1호)에 가입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각각 지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이때 개정안의 정부 지원율은 20% 이상인데, 본 추계에서는 최소 비율인 20%로 가정함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전체 비수도권 청년(만 15세~34세) 가입자 수는 3.6만명이며 이 중 비수도권 청년은 1.8만명 수준임

-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한 비수도권 청년의 월 평균 공제부금은 2024년 기준으로 122천원, 해당 기업의 경우 270천원 수준임

[표 2]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청년)

(단위: 명,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누적 가입자 수	17,935	20,464	24,216	29,780	35,500
수도권	8,000	9,337	11,365	14,194	17,175
비수도권	9,935	11,127	12,851	15,586	18,325
신규 가입자 수	2,114	2,529	3,752	5,564	5,720
수도권	1,106	1,337	2,028	2,829	2,981
비수도권	1,008	1,192	1,724	2,735	2,739
근로자 1명당 공제부금(월)	119	121	116	116	118
수도권	119	120	115	114	115
비수도권	118	123	117	117	122
기업 1명당 공제부금(월)	283	280	268	256	265
수도권	278	276	265	262	260
비수도권	289	285	272	249	27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추계기간 동안 비수도권 청년 가입자 수(신규)는 최근 증가 추세가 둔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수준으로 가정하며, 가입자 1인당 공제부금 또한 2024년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비수도권 청년 가입자 수(누적)는 2027년에 0.3만명, 2031년에 1.4만명으로 추정되며, 정부의 지원금은 청년 근로자 및 기업의 2024년 부담(월 392천원)의 20% 수준인 월 78.4천원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5억 7,700만원, 2031년 128억 8,4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386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누적 가입자 수(A, 명)	2,739	5,478	8,217	10,956	13,695	—
정부지원금(월)(B, 천원)	78.4	78.4	78.4	78.4	78.4	—
추가재정소요 (A×B×12월, 백만원)	2,577	5,154	7,731	10,307	12,884	38,65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